

1. 개정이유

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·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·사용의 근거를 규정하고 음주확인·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사용(음주측정방해)을 금지하는 내용의 「철도안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21819호, 2026. 6. 16. 공포, 2026. 12. 17. 시행)됨에 따라,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사용금지 물품 구체화(안 제76조의10)

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규정

나.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소유자 통지 절차 규정(안 제76조의11)

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후 지체없이 통지하되 출입 목적·장소·일시 등을 포함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을 규정

다. 타인의 토지 출입 시 신분증표에 필요한 사항 규정

(안 제76조의12, 별지 제45호의20서식)

타인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‘증표’ 서식을 신설하고 성명·유효기간·발행기관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 요청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10부터 제76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10(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)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“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베라파밀염산염(Verapamil Hydrochloride)
2. 에리트로마이신(Erythromycin)

제76조의11(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등의 통지) ①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 또는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

1. 출입 또는 행위의 목적
2. 출입 또는 행위의 장소
3. 출입 또는 행위의 일시 및 기간
4. 수행기관 및 담당자의 성명·연락처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1. 서면 교부 또는 우편
2.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
3. 현장 고지 또는 그 밖에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

③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출입 장소에 통지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.

제76조의12(토지출입권한증명서) ① 법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의20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토지출입권한증명서는 철도운영자등의 장이 발행한다.

③ 다만, 법 제4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허가의 범위에서 증명서를 발행한다.

④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위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자 소속 직원에게 토지출입권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별지 제45호의2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토지출입권한증명서		
성명		
주소		
생년월일		
발급연월일		
유효기간	년 월 일 ~	년 월 일까지
위 사람은 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의2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12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.		
		년 월 일
발행기관장		직인

91mm×64mm[백상지(15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76조의10(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)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“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	
		1. 베라파밀염산염(Verapamil Hydrochloride)		
		2. 에리트로마이신(Erythromycin)		
<u><신 설></u>		제76조의11(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등의 통지) ①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 또는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		
		1. 출입 또는 행위의 목적		
		2. 출입 또는 행위의 장소		

<신 설>

3. 출입 또는 행위의 일시 및 기간

4. 수행기관 및 담당자의 성명·연락처
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1. 서면 교부 또는 우편

2.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

3. 현장 고지 또는 그 밖에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

③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출입 장소에 통지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.

제76조의12(토지출입권한증명서)

① 법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5호의20서식의

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토지출입권한증
명서는 철도운영자등의 장이 발
행한다.

③ 다만, 법 제45조의2제3항 단서
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
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허가
의 범위에서 증명서를 발행한
다.

④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45조의2
제1항에 따른 행위를 업무대행
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
업무대행자 소속 직원에게 토
지출입권한증명서를 발급할
수 있다.